

대학원 미래ICT융합·창업학과 운영 내규

제1장 총칙

제1조 (목적) 본 내규는 단국대학교 창학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학원의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라 미래ICT융합학과의 합리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정리하는 데 목적을 둔다.

제2조 (적용범위와 효력) 본 내규는 일반대학원 미래ICT융합학과 석·박사과정 및 통합학위과정에 적용되며,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.

제2장 입학관리

제3조 (우수학생의 유치) 미래ICT융합학과 소속 교수들은 미래ICT융합학과 석·박사 및 통합 학위과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 학생의 모집에 적극 노력한다.

제3장 교육과정 및 교·강사 배정

제4조 (교육과정) 미래ICT융합 교육 및 연구에 적합한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하며, 일반적인 규정은 학칙에 따른다.

제5조 (과목개설 및 필수교과목 이수) 미래ICT융합 교육 및 연구에 적합한 교과목을 개설하며, 일반적인 규정은 학칙에 따른다.

제6조 (교·강사 배정) 각 교과목은 미래ICT융합 교육 및 연구에 적합한 교·강사를 배정하며, 일반적인 규정은 학칙에 따른다.

제4장 논문지도

제7조 (지도교수의 선정) 일반적인 규정은 학칙에 따른다.

제5장 자격시험

제8조 (종합학력시험 면제기준) ① 한국연구재단 등재(후보)지 논문 게재(단독논문 및 공동논문으로 하며 공동논문의 경우 제1저자나 교신저자) 및 국내 학회

학술대회 발표논문은 다음과 같이 종합학력시험을 면제한다.

1. SCI 및 SSCI급 학술지 논문 게재 1편당 4과목 면제
 2. 한국연구재단 등재(후보)지 또는 SCOPUS 논문 게재 1편당 2과목 면제
 3. 국내외 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또는 교내 일반학술지 논문 게재 1편당 1과목 면제
- ② 논문 게재 및 발표를 통해 종합학력시험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시험 30일 이전까지 게재(발표)되었거나 게재확정서를 제출해야 한다.
- ③ 2017년까지의 입학자에 한하여 전 과목 성적 90점 이상일 경우 면제

제8조 1(학위논문 신청자격) 학위논문 심사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.

1. 석사과정 : 국내 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1편 이상
2. 박사과정 : 한국연구재단 등재(후보)지 논문 게재 1편 및 국내 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1편 이상

제9조 (종합학력시험 출제와 채점) 학칙에 따라 석사과정은 전임교원의 과목 중 2개 과목 이상, 박사과정은 전임교원의 과목 중 4개 과목 이상으로 하며,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0조 (외국어시험 과목) 미래ICT융합학 연구에 필요한 영어, 중국어, 일본어 중 하나를 선택한다.

제6장 학위과정

제11조 (석사학위 과정 선택) 석사학위 취득은 학위논문을 심사 통과하여야 한다.

제12조 (석사학위 과정의 변경) 학위취득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, 사유서 첨부 후 주임교수의 승인을 득한 후 3학기 말까지 대학원장의 승인 하에 변경할 수 있다.

제7장 학위논문 심사 및 제출

제13조 (연구계획서 제출 및 심사) 석·박사과정 중 혹은 수료 후 적절한 시기에 지도교수에게 연구계획서를 제출한다.

제14조 (예비발표) 학위논문심사 최소 한 달 전까지 예비발표를 진행한다.

제15조 (논문심사위원) 일반적인 규정은 학칙에 따른다.

제8장 학과 운영위원회

제16조 (의사결정 방식) 학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의사결정은 학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체교수 1/2이상의 참석(위임 포함)과 참석교수의 2/3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